

인터넷상 저작물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프랑스 법안

연구실 법제연구팀

I. 序

프랑스 정부는 2008년 6월 18일 수상 및 문화통신부 장관 발의로 “인터넷상 창조적 저작물의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법안(PROJET DE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정부 법안은 6월 25일 상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현 프랑스 정부의 주관으로 2007년 11월 저작권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정부 사이의 협약(일명 ‘Elysée 협약’)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삼진아웃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위원회에서도 이 법안 제도를 EU지침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인터넷 불법복제물 유통이 범람하는 오늘날 프랑스 정부의 ‘삼진아웃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삼진아웃제’의 입법 배경 및 과정, 이 제도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현행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내용의 개정을 설명한 프랑스 정부 법안의 ‘제안 설명문’ 부분을 번역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II. 제안 설명문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문화 창작물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상의 음악, 영화, 시청각 저작물 및 프로그램과 어문 저작물의 합법적 시장에 필수불가결한 법적인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현행의 형사기소에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

순한 사회적인 현상을 뛰어 넘어, 인쇄기가 발명된 이래 문화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특별하고 유래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비물질적인 상품을 배포할 수 있는 수단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지적재산권이 존중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하는 환경이 유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10억 개의 음악 및 시청각 저작물이 불법다운로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물의 창작과 진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예술 경제에 심한 악영향을 미친다. 많은 실연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음반사와 계약을 맺는 실연자의 숫자도 매년 40%씩 감소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음반 시장의 규모 및 매출액은 50%나 축소되었다. 영화업계와 방송업계도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출판업계도 곧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물리적 매체에 미치는 영향들 외에도 불법복제물의 만연은 오늘날 프랑스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물질적인 디지털 음악, 영화 및 시청각 프로그램의 매출액은 물리적인 매체(CD나 DVD 등)의 매출액에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다. 비물질적인 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경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프랑스는 7%가 조금 넘는 정도이다.

불법복제는 예술가 및 후원 기업(특히 소규모의 독립 제작 업체들)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저해하고 경쟁을 위축시킨다.

한편 지난 몇 년간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예로 이제는 수백만 개의 음반을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특히 ISP들이 정액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소비자 가격 역시 많이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영화, TV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음원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의 빠른 성장 및 예술가와 문화산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속적인 대규모의 불법복제이다.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형사범죄에 기초하여 최고 €300,000의 벌금과 최장 3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일반적인 불법복제의 법적 절차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수백만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기피하여 이러한 형벌규정은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불법복제를 한 인터넷 사용자는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정부가 대규모의 불법복제가 이루어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가 및 후원 기업들에 의한 형사소송은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형벌 외에, 법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 접속을 모니터링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 L. 335-12조에서는 가입자가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문학적, 예술적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의 형벌에 관한 장에 이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인터넷 사용자들과 프랑스 문화 산업계 모두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창작성의 원천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정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는 저작자의 저작권과 인터넷 사용자의 사생활 존중이라는 두 기본권 사이의 깨어진 균형을 재정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의 초안에서 채택된 방안은 경험칙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는 문화 및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선행된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의 마련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9월 음악, 영화 및 시청각 산업계의 전문가와 ISP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임무가 Dennis Olivennes 'FNAC(Fédération Nationale d'Achats pour Cadres, or National Purchasing Federation for Managers, 프랑스 최대 온라인 음악, 영화, 서적 등 저작물 판매업체)' 회장에게 맡겨졌다.

이 방안은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제로 현재 ISP들은 합리적 가격의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고자 하며, 문화 경제에서 정직한 배포자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영화나 시청각 저작물에 더 빠르게 접근하고(현 프랑스에는 영화관 개봉 후 7 1/2개월의 대기기간 규제가 있다), 적법하게 구입한 디지털 음원을 모든 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기를 원한다. 또한, 저작권자와 문화 산업계는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이용방법 및 가격의 다양성·유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임무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음악, 영화, 시청각, 인터넷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사안이 급박한 만큼 공청회 다음 후 신속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의 결과는 역사적인 협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월 23일 42개(현재 46개) 업체 및 단체의 대표들은 Elysée궁에서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득이 되면서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영화, 음악 및 시청각 업계가 불법복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법적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합의했다는 점 및 ISP와 최초로 합의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역사적이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예술적인 창작과 배포 활동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협약은 향후 영화나 음악이 공유되는 사이트 및 출판업계까지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lysée 협약’이 담고 있는 규정과 방식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예컨대 영국) 또는 다른 대륙(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이미 비슷한 성격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상 창조적 콘텐츠의 통신에 관한 유럽위원회는 2008년 1월 3일 디지털 네트워크 접속 및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자 및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온라인 불법복제 공동대응 방안 및 합법적 시장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관련 업계 및 회원국들이 프랑스의 예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Elysée 협약’은 불가분적인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접근이 더욱 쉽고 더욱 다양·유연한 합법적 시장을 제공한다. 음반 제작 업체들은 프랑스에 발매되는 모든 콘텐츠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원 파일을 모든 종류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영화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가 공개되는 대기기간도 DVD 수준(영화관 개봉 후 6개월)으로 낮춰진다. 그리고 1년 내에 다른 매체로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및 논의가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대량 불법복제 방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안이 담겨 있다. 향후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이 통신·정보 교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배포를 위한 효율적·현대적 수단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로 방지 조치로 구성되며, 어문 및 예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법원 외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저작권자 이익을 대변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침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다. 이런 해결책은 대량 불법복제의 경우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약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처벌을 위한 새로운 독립 행정기관을 설립하기로 한다.

2006년 의회에서 발의되어 설립된 이 기관은 기술적 조치를 규율하는 기관으로써, 기술적 보호 조치의 상호호환성 및 조치의 사용이 사적복제의 예외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 기관은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급 및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상급 기관(High Authority of the dissemination of works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이하 HADOPI라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HADOPI의 저작물 보호역할과 관련,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이나 사용료 징수기관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HADOPI에 통보할 것이다. 그 다음 HADOPI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권고 사항(recommendations)’라는 경고 이메일을 발송한다. 이후 수취확인 등기우편으로 침해 관련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자가 무엇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에 앞서 예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지금까지는 법이 규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인 절차는 꼭 필요한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발행된 2008년 3월 ‘Entertainment Media Research’지의 인터넷 사용자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70%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경고 메일을 받으면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90%가 두 번째 경고 메일을 받을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해 조사한 수치와 일치하며, 미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자와 ISP 사이 합의로 유사한 조치를 해결책으로 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의 인터넷 사용자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은 후 불법 다운로드를 중단하였고, 85%~90%의 사용자들은 두 번째 경고를 받은 후 그리고 97%의 사용자들은 세 번째 경고(ISP에 따라 등기우편 또는 전화 형식)를 받은 뒤 불법 다운로드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IPOS가 2008년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두 번의 경고메일을 받을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고 답하여, 위와 같은 조치는 프랑스에서도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단계로, HADOPI는 판사의 통제 하에 인터넷 사용자의 계정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계정이 중단된 기간 동안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조치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ISP는 신규 가입계약을 하기에 앞서 그 가입자가 HADOPI에 의해 계정 중단조치를 받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HADOPI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 중단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ISP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HADOPI는 통신서비스의 이용 행태가 명백히 전문적 침해인 경우 다른 벌칙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형벌의 위화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당해 조치는 가입자 부담으로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인터넷서비스 접속 차단조치가 무용지물인 회사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이 일련의 조치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모니터링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이미 현행 지적재산권법 L. 335-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가입자의 의무는 향후 개정되어 벌칙을 수반하는 것으로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어문 및 예술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접속하지 않아야 할 의무 위반에 대해서, 경고장 수취 후에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 받게 되며 동 기간동안에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 가입도 금지된다. 한편 HADOPI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화해의 방식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단기간 인터넷 차단을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HADOPI와 가입자간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화해는 이 제도의 교육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진보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인터넷 가입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자신의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HADOPI는 모니터링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 목록을 마련할 것이다. 인터넷 가입자는 자신의 접속망에 대한 제3자의 부당한 접근 또는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다. 단, 이러한 부당행위가 서비스 가입자의 관리 또는 감독 하에서 이루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작권 보호와 문화 창조의 두 가지 목적상, 인터넷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 336-3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적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침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입자에 대한 사항은 고등 법관의 지휘하의 저작권보호위원회 및 행정 조회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에 의해서만 다루어진다. 나아가 ISP가 계정 정지된 가입자에 대해 조회하는 내용은 가입 계약자 성명의 명단 포함 여부 확인에 한정된다. 비록 법상으로는 절차 진행 및 계정 정지된 가입자 명단의 확보와

관련하여 HADOPI에게 자동화된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보 처리 및 자유에 관하여 정부는 국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것이며, 정보 처리, 정보 및 자유에 관련된 1978년 1월 6일 법 no. 78-17 제30조의 사전적 절차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 법령상의 법적용 절차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최고 행정법원의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이 법에 보장된 절차를 보완할 것이다.

또한 HADOPI는 저작물의 불법사용 영역 및 'Elysée 협약'의 일부인 합법적 시장에서 음악, 영화 및 시청각 매체 저작권자들의 협력에 대한 모니터링 기관으로써의 임무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Elysée 협약'의 취지에 맞춰 절차에서의 효율성 제고 및 양 당사자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법 L. 332-1조 4항에 의해 고등법원장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온라인 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저작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침해 재개를 금지 또는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위해 HADOPI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조는 권한 조정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현행 기술적 조치 규율에 관한 당국의 권한을 규정한 지적재산권법 조문들을 재분배한다.

제2조는 이 법안의 핵심내용을 구성한다. 지적재산권법 첫 번째 부분 제III책 제III편 제1장 제3절은 기술적 조치 규율을 위한 기관인 "인터넷상 저작물의 보급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급 기관(HADOPI)"에 대해 규정한다.

지적재산권법 L. 331-12조부터 L. 331-36조까지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이 조항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HADOPI의 권한, 구성 및 조직(제1관),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저작물 보호 임무(제2관),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불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임무(제3관) 및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정보 영역의 모니터링 및 규율 임무(제4관)이다.

L. 331-12조는 HADOPI의 설립을 규정하고 독립 행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부여한다.

L. 331-13조는 HADOPI의 3가지 임무를 열거한다.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저작물 보호, 저작물의 불법사용 및 합법 시장 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기술적 보

호조치 및 권리정보 영역에 대한 규율이다.

L. 331-14조는 HADOPI 위원회와 HADOPI내의 권리보호위원회를 구별한다.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HADOPI에 부과된 임무는 위원회가 수행한다. 이 권한 분배에 따라 권리보호위원회는 제2관의 불법복제에 대한 방지조치 및 형벌을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L. 331-15조는 HADOPI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위원회는 현재 5명 위원(최고행정법원의 부법원장이 임명하고 최고행정법원에 보고하는 공무원, 항소법원장이 임명한 항소법원 소속의 자문관, 회계법원장이 임명한 회계법원 판사, 기술 아카데미장이 임명한 위원, 어문 및 예술 저작물 상급위원회 자이 임명한 위원)에 전기통신부, 소비자부 및 문화부 장관들의 공동추천에 의해 임명된 4명의 위원을 추가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위원회는 더 이상 지적재산권법 L. 311-5조의 “사적 복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자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는 “사적 복제 위원회”의 결정과 연관된 사적 복제 예외 혜택 관련된 판단 과정에서 위원회 판단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HADOPI의 독립성 및 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은 판사 또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3명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은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임기가 2년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 기관의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은 3년마다 부분적으로 새로 임명한다.

L. 331-16조는 권리보호위원회에 불법복제 방지 및 형벌 부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권리보호위원회는 결정의 공명성 및 집행 절차상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생활 존중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위원들을 구성한다.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임명된 법관의 자격을 갖춘 판사 또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동안 연임되거나 해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ADOPI 위원회와 권리보호위원회의 위원직은 겸임할 수 없다.

L. 331-17조는 위원회 및 권리보호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현행 L. 331-19조에 규정된 겸임금지의 주요 내용을 재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음악, 영화, 저작물 및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사 또는 저작권 및 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및 콘텐츠의 다운로드 서비스나 공유와 관련하여 HADOPI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L. 331-18조는 서비스, 기록, 예산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HADOPI의 지출비용과 관련하여 현행 L. 331-20조의 규정 일부분을 재규정하고 있다.

L. 331-19조는 HADOPI의 결정은 (권리보호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내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에게 casting vote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L. 331-20조는 권리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침해 주장자에 관한 건은 이에 관련해서 임명된 공무원에 의해서 특별히 다루어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절차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 접근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특권 구조 및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L. 331-21조는 위 규정의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고행정법원 법령에 따른 윤리의무 준수 선서를 포함한 행정 조회를 거쳐야 한다.

L. 331-22조에서부터 L. 331-35조까지를 포함한 제2관은 전기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창작물을 보호 임무와 관련하여 HADOPI의 권한을 규정한다.

L. 331-22조에서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전문 협회, 저작권료징수 회사, 국립영화센터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임명한 공인 담당자에 의한 권리 침해 주장 사실이 없는 한 권리보호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한편, 권리보호위원회는 검사가 송부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집행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침해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L. 331-23조는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침해자의 L. 336-3조 의무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한정하고 있다.

L. 331-24조부터 L. 331-28조까지는 저작권 침해 중단을 위해서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한다.

침해가 범위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권리보호위원회는 우선 인터넷으로 가입자에게 L. 336-3조의 의무 및 침해 재발의 경우 부과될 수 있는 형벌 내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은 경고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침해가 재발할 경우 수취확인 등기우편으로 경고장을 보낸다. 권리보호위원회는 제도의 교육적 효과 확보를 위해 특별한 상황 외에는 이 절차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법규정 내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고장은 고소장이 아니다. 즉, 경고장은 법적 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며 경고장에 대한 항변은 형벌 결정에 대한 항소로만 할 수 있다.

다시 범위반 사실이 재발할 경우, 위원회는 경고장 수취 다음 연도에 3개월에서 1년 까지의 기간동안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고 그 기간동안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단, 가입자에게 이 벌칙 대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단기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화해를 권할 수 있다. 가입자가 화해를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접속차단 명령은 엄격하게 공중 온라인통신서비스 접속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혼합 서비스 상품의 경우 전화나 TV 서비스는 차단되지 않는다. 또한 명령은 가입서비스가 선불로 지급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가입자는 계약상의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의 이용 행태가 명백하게 전문적 침해인 경우 HADOPI는 침해 가입자에게 명령의 형식으로 침해 재발 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형벌의 위화 효과를 위해서 정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명령 조치는 가입자 비용으로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이 무용지물인 기업이나 사업체가 가입자인 경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벌칙에 관해서는 법원에 취소 또는 재심 항소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항소에 관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행정법원 법령에는 벌칙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L. 331-29조는 권리보호위원회가 L. 331-26조의 화해 또는 L. 331-25조의 접속차단에 대해 통지한 경우 ISP는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시 최고 €5,000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취소 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법령에서는 항소에 관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행정법원 법령에는 벌칙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L. 331-30조는 HADOPI에게 L. 336-3조 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제8조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에 관한 법

no. 2004-575 제6조 I의 1항과 관련하여 ISP는 가입자에게 이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L. 331-31조의 목적은 권리보호위원회에 의해서 명령된 벌칙 또는 가입자가 합의한 벌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HADOPI에게 공중 온라인통신서비스 접속이 차단된 자들의 공식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ISP에게 새로운 가입계약 전 명부에서 가입자 성명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명부 확인은 가입계약자의 이름이 명부에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ISP는 매 불이행시 최고 €5,000의 벌금형이 과해지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 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법령에서는 항소에 관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행정법원 법령에는 벌칙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L. 331-32조는 ISP가 새로 가입계약을 할 경우 경고장 및 벌칙 절차에 관한 지적재산권법 규정 내용을 명시할 의무를 규정한다.

L. 331-33조는 권리보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최종 위원회가 부과한 벌칙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련 기술적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L. 331-34조는 권리보호위원회에 의한 경고장 및 벌칙 절차 그리고 접속 차단자 공식 명부를 위한 개인 정보 데이터 자동 처리 절차를 신설에 대해 규정한다. 이 규정의 적용 절차는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최고행정법원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L. 331-35조는 최고행정법원 법령에 의해 HADOPI 위원회 및 권리보호위원회에서의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율할 것을 규정한다. HADOPI의 기술적 조치 규율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지적재산권법 L. 331-17조 따라 기술적 조치 규율 기관에 관한 2007년 4월 4일 법령 no. 2007-519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위원회 및 권리보호위원회의 새로운 권한에 대해 규정하도록 한다.

L. 331-36조는 보호 저작물의 불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합법적 시장의 개발 영역에 관한 지표를 HADOPI가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협약의 당사자인 문화산업계의 주요 협력 사항(점진적으로 영화, 저작물,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음악파일 호환

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는 것)인 합법 시장의 개선을 보장하고, 면밀하고 공명하게 모니터링 할 것을 규정한다.

제3조는 HADOPI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제3권 제3편 제1장 제3절에 제4관을 신설 및 보호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정보 영역의 기술적 조치 규율 관련 HADOPI에게 부과된 임무에 대한 조항을 종합하여 규정한다.

제4조는 인터넷 가입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 처벌 규정 및 면책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 L. 336-3조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가입자에게 어문 및 예술 저작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접속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현행 지적재산권법 L. 335-12조를 삭제한다.

제5조는 절차에서 양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법 L. 332-1조의 4호에서 고등법원장에게 부여된 법원의 권한을 온라인 공중 통신서비스 콘텐츠로 야기되는 저작권 또는 인접권 침해의 재발생을 방지 또는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매개체에 대한 모든 조치에 관한 권한으로 변경한다.

지적재산권법 L. 33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고등법원장은 ... , [구체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접근권을 차단하여 콘텐츠의 보관을 금지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공중 통신서비스의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조치의 취소 또는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의 조화를 위한 2001년 5월 22일 유럽 의회의 2001/29/EC를 프랑스 법률에 반영할 목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법 no. 2004-575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L. 332-1조의 다른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유효한 위조품을 몰수하는 것과 그 목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4호의 규정은 여러 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양 당사자의 주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심리할 수 없는 절차는 부적절하다. 다수의 법적 견해는 잠정조치를 이용하는 것을 벌써부터 고려하고 있다.

둘째, L. 332-1조에 이러한 절차를 두는 것은 L. 332-3조 규정 조건에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재판관에게 제기할 의무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부담으로 작용한다 : “청구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소관 법원에 심리를 받지 않는 경우 피압류인 또는 제3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장은 예심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조품의 몰수 절차를 통해 EC 지침의 차단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그 실질적 목적과 관련하여 무의미한 혼란만 유발한다. 더구나 다른 회원국들은 해당 EC 지침을 잠정적 조치 또는 단기 심리 절차로 도입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예가 벨기에 법이다.

그러므로 제5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법 L. 332-1의 4항을 내용을 변경한다. 잠정적 조치 형태의 절차는 양 당사자의 진술 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상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배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적절하다. 잠정조치 심리 다음 단계 절차를 생략하는 점에 대해, 이 제도는 잠정조치 후 양 당사자의 진술을 심리하므로 보완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제안된 L. 336-2조는 지적재산권법의 현행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 no. 2006-961을 근거로 하는 이 조문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ISP가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Elysee 협약’ 범위 내에서 교육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여, 이 규정은 관련 적용 법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류 중이다.

제6조는 지적재산권법에 L. 336-3조를 신설하여 권리보호위원회의 권고 및 벌칙 집행 절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그 규율 대상은 형사 재판 대상인 저작물 위조죄가 아니라, 현행 L. 335-12조상의 공중 온라인 통신서비스 접속자의 어문 또는 예술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접속하지 않을 의무이다.

L. 336-3조의 두 번째 단락은 이 규정 의무 위반자는 L. 331-25조 규정 조건 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의무 및 벌칙 적용에 대해 규정한다.

이어지는 단락은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접근권자가 L. 33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실행한 경우 접근권자의 면책을 규정한다. 또한 접근권자가 가입자의 감독·관리 하에서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부당하게 서비스에 접근한 경우 가입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의 경우도 면책을 규정한다.

제7조는 데이터베이스 창작자에 의한 보호 및 권리정보의 기술적 조치 영역에서의 HADOPI의 규제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다시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의 법 no. 2004-575 제6조 I 제1호의 규정을 개정한다. 그 목적은 ISP가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기술적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접근권자는 지적재산권법 L. 336-3조의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제한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일명 보호자 통제(parental control))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이 조문은 ISP에게 이러한 조치를 제안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제9조는 HADOPI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우편 및 전기통신 법’ L. 34-1조 II를 개정한다. 현행 조항은 조사 및 형사 수사를 위한 경우 최장 1년 동안 정보 소통과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의 특정 카테고리를 제거하거나 익명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전기통신 운영자 및 ISP가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ACEM 및 기타 단체들에 대한 2007 5월 23일 결정에서 최고행정법원은 L. 34-1조에 의하면 형사상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닌 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교육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L. 336-3조의 의무위반에 대한 HADOPI의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10조는 인터넷상 저작물의 보급과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규제를 담당 하는 기관을 HADOPI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규정한다. 또한 최고행정법원 법에서 이미 체결된 가입계약을 관련하여 L. 331-29조, L. 331-31조 및 L. 331-32조상의 ISP의 의무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도록 한다.

제11조는 제안된 법안의 역외 적용에 대해 규정한다.

I에서는 형법 위반 및 해당 주의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프랑스령 Polynesia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그러나 Mayotte, Saint-Barthélemy, Saint-Martin, Saint-Pierre-et-Miquelon과 프랑스령 남쪽 식민지 및 프랑스령 남극 지역뿐 아니라 Wallis & Futuna 섬, New-Caledonia에는 이 법이 법적으로 적용된다.

II에서는 해외 속령에 관한 법·제도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2007년 2월 21일 법 no. 2007-223 및 no. 2007-224에 맞추어 지적재산권법 L. 811-1조를 개정한다. 실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Mayotte와 프랑스령 남쪽 식민지 및 프랑스령 남극 지역에 법적으로 적용된다(민법이 법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는 이미 정립된 법률에 근거하여 단순 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다.